■ 자치통감 이야기

무능한 황제의 욕심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북위 시대의 고환은 최고의 권력자였다. 그는 북위에서 6진(鎭)의 반란을 진압하고 군권을 장악한 사람이다. 그 후에 북위의 권력자 이주(爾朱)씨를 토벌하면서 완전히 북위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효무제 원수(元脩)를 세웠지만 원수가 고환의 세력을 꺾으려다 실패하고 장안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다시 원선견(元善見)을 황제로 세웠으니 그 권력을 짐작할 만 한 것이다.

이러한 절대적 권위를 가진 고환의 첩이 고환이 밖에 나가 있는 틈에 그의 장남인 고징과 통정하였고, 그것이 발각되었다. 고환으로서는 밝히고 싶지 않은 추문이었지만 이 사실은 고환이 돌아오자마자 밖으로 드러났다. 한 명의 비녀(婢女)가 이 사실을 알렸고 두 명의 비녀가 입증까지 했으니, 고징은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고환은 고징에게 100대의 장(杖)을 쳐서 유폐시키고, 그를 낳은 생모 누비(婁妃)도 만날 수 없게 하였다. 이제 고징은 더 이상 고환에게 장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고환은 북위의 황제인 원수가 장안으로 도망하면서 낙양에 남겨진 황후 이주씨(爾朱氏)를 받아들이고 아들 고유(高浟)를 낳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유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였다. 전 황후에게서 난 아들을 후계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코너에 몰린 아들 고징으로서는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자 아버지 고환의 후계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마자여(司馬子如)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사마자여는 고환이 이주씨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운다면 고환의 비인 누씨 또한 그 지위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들어서 누비와 고환을 설득하였다. 고징하나만 처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비까지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마자여는 자기 아들 사마소난도 자기의 첩과 통정하였는데 이를 덮어 버렸다고 말하면서 첩이란 정실부인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정비인 누씨는 고환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지극 정성으로 고환을 돌보았었다. 이를 두고 사마상여는"왕과 머리카락을 매어 부인이 되었고, 항상 부모의 가재(家財)를 가지고 왕을 받들었으며, 왕께서 회삭(懷朔, 하남성 심양시)에서 장형(杖刑)의 형벌을 받아 등에는 온전한 피부가 없었지만, 왕비가 낮과 밤으로 받들어 모셨고, 뒤에 갈적(葛賊)을 피하여 함께 병주(并州, 산서성 태원시)로 도주하였으나 빈곤해지자, 왕비는 마시(馬矢, 말똥)로 불을 지폈고, 스스로 가죽신을 지었으니, 그 은의(恩義)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설득했다. 뿐만 아니었다. 고징을 흔들어 놓으면 고환을 위하여 공훈을 세웠던 누씨 친정의 오라버니인 누(婁)영군장군의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마자여는 말하였다. 고징 하나를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고징은 감정대로 자기의 후계로 이주씨의 소생이냐, 첩고 통정한 누비의 소생 고징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이주씨는 고씨 집안에서 토벌한 집안이고, 누씨는 자기를 도와 준 집안이었다. 결국 이주씨 쪽을 버리고 누씨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려면 고징과 고환의 첩이 통정하였다는 사실이 거짓말로 만들어야 했다. 고환은 그 책임을 사마자여에게 맡겼다.

먼저 사마자여는 고징을 나무랐다. "사나이가 무슨 생각으로 위엄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오?"이 말은 고징은 고환의 비첩과 통정하지 않았는데, 두 비녀가 고발하자 아버지의 위엄에 눌려서 거짓으로 통정했다고 자백한 것을 나무란 것이다. 통정이 사실이 아닌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거짓 자백을 했다는 말이었다. 이로써 고징은 허물을 벗었다.

다음으로 두 비녀(婢女)에게 고징과 고환의 첩이 통정했다고 증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게 한 것이다. 이쯤 되면 처음으로 이 사실을 고발한 사람이 문제였다. 사마자여는 고발한 사람을 위협하여 스스로 목을 매어 죽게 하고, 마침내 고환에게 계문을 올렸다. "과연 헛된 말이었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정확하게 한 것이다. 고환이 크게 기뻐하며 누비(婁妃)와 고징을 불렀다.

고환의 부름을 받은 누비는 멀리서 고환을 보고 한 걸음 걷고 한 번 머리를 조아리고 또 한 걸음 걷고 또 머리를 조아렸다. 고징 또한 절을 올리며 또 나아가니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눈물을 흘렸고, 다시 처음과 같이 되었다. 고환이 술자리를 마련하고 말하였다. "우리 부자관계를 온전하게 한 사람은 사마자여이도다!"사마자여에게 황금 130근을 하사하였다.

16세 문충공(文忠公) 諱 근(近)

〈1352. 恭愍王1~1409. 太宗9〉

공(公)의 자(字)는 가원(可遠)이다. 뒤에 사숙(思叔)으로 고쳤다. 호(號)는 양촌(陽村)이고 안동부(安東府)사람이다. 고려정승 권 보(權溥)의 증손이며 검교정승(檢校政丞)희(僖)의 아드님이다.

공은 어릴적부터 글읽기를 부지런히 하여 그침적이 없었다.

홍무(洪武) 기유년에 나이18세로서 병과(丙科)에 뽑혀 춘추검열(春秋檢閱)에 제배(除拜)되어 왕부비자치(王府祕書赤)가 되었다.계축년에 과거(科擧)향시(鄕試)에 3등(제3명)으로 합격하였으나, 나이가 25세미만(未滿)인 까닭에 경사(京師)에 가서 응시하지 못했다.

공민왕(恭愍王)이 갑자기 죽자, 원조(元朝)에서 사신을 보내어 반사(頒赦)하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예(禮)로 접대하기를 강요하였다.

공(公)이 정몽주(鄭夢周)·정도전(鄭道傳) 등과 더불어 도당(都堂)에 상서(上書)하여 원나라사신을 받아들이지 말기를 청하였는데, 그 말이 간절하고도 곧아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국정(國政)을 담당한 자들이 이들을 모두 무고(誣告)하여 죄를 뒤집어 씌워 내 았으나, 공(公)이 나이가 어려서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면할수 있었다.

임술년에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에 재배되어, 위주(僞主)우왕(禑王)이 왕위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음희(淫戲)로 절도가 없었으므로, 상소하여 극진히 간(諫)하였다. 우왕이 이에 말을 받아들이고 간초(諫草)를 써서 병풍에 붙이도록 명하였다.

갑자년 겨울에 대언(代言)에 궐원(闕員)이 생겼는데, 당시 재상이 공(公)의 이름을 올려 추천하였다. 이 때 우왕(禑王)이 말하기를 "이사람은 일찍이 간관(諫官)이 되어 나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게 했다."하고 붓(筆)을 잡아 그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다.

무진년 봄에 최영이 국정을 담당하여 중국에 대항할 뜻을 가지고, 무릇 중국조정에 보내는 글에 사대(事大)의 구례(舊例)를 쓰지 아니하고 초격(초격:과격한 글)으로 이자(移咨:보내어 물음)하려고 했다. 이에 공(公)이 면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해서 마침내 초격(草檄)을 쓰지 아니하였다.

여름에 태조(太祖)가 의(義)를 들어 회군(回軍)하여 최영을 잡아 물리치매, 좌대언(左代言)에 재배(除拜)되었다가 곧 지신사(知申事)로 옮기고, 동지공거(同知貢擧)로서 이은(李垠) 등 33인을 뽑았다. 기사년 봄에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에 승진하였고, 여름에는 문하평리(門下評理) 윤승순(尹承順)과 더불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경사(京師)에 갔다.

가을에 예부(禮部)의 자문(咨文)1통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국구(國舅:임금의 장인) 이임(李琳)이 당시에 좌상(左相)이 되어 묘당(廟堂)에 나와 앉아 있었으므로, 그 자문(咨文)을 넘겨주었다.

우리 태조는 우상(右相)이 되었으나 마침 신병으로 인하여 집에 있었는데, 어떤사람이 이 틈을 타서 태조께 진언하기를,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은 이성(異姓-辛氏:창왕)이 왕이 된 것을 문책한 것인데 권근이 홀로 이임과 더불어 뜯어보았습니다."고 하였다.

10월에 대간(臺諫)에서 李崇仁(陶隱-麗末三隱의 한분)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경사(京師)에 가서 재물을 모은 죄를 탄핵하여 폄출(貶黜)되었다. 공(公)이 도은의 뒤를 이어 경사에 갔던 까닭으로, 이숭인의 무고(誣告)를 당한 사실을 알고 상서(上書)하여 그의 무죄함을 밝혔다.

대간에서 공(公)이 죄인의 편을 들고 언관(言官)을 헐뜯는다고 탄핵하여 우봉(牛峯)으로 폄출하였다. 공양왕(恭讓王)이 즉위(卽位)하게 되자 대간에서 탄핵하기를, '권근이 사사로이 자문(咨文)을 뜯어서 먼저 이임(李琳)에게 보였으니, 이는 이성(異姓)을 편든것이라' 고 논죄(論罪)하여, 영해(寧海)로 옮겨 유폄(流貶)시켰다. 경오년 봄에 대간에서 다시 논핵(論劾)하여 극형(極刑)에 처하려고하였는데 태조(太祖이성계)가 구원해 줌에 힘입어 장(杖)을 맞고 흥해(興海)로 양이(量移)되었다. 그 해 여름에 이색(李穡:牧隱)이하 여러 폄소(貶所)에 있던자가 모두 청주(淸州)의 옥(獄)으로 잡혀와 갇혔었다. 하늘에 갑자기 큰비가 내려 물이 넘쳐 성안에 들어와서 공해(公廨)가 모두 물에 잠겼었다. 여러 문사관(問事官)들이 나무위로 기어 올라가 물을 피하였으므로, 갇힌자들이 모두 달아나 피하였다.

이때 공(公)만이 홀로 꼿꼿이 앉아서 신색(神色)이 자약(自若)하며 말하기를, "내가 만약 죄가 있으면 마땅히 천벌(天罰)을 받을 것이고, 만약 죄가 없으면 하늘이 어찌 나를 물에 빠져 죽게 하겠느냐?"하였다. 이 때 죽음을 면하여 한양으로 돌아왔다가 익주(益州)로 옮겼었는데, 〈입학도설〉을 지었다. 듬해 충주(忠州) 양촌(陽村)으로 방환되어 『시경(詩經)』 서경(書經)주역(周易) 춘추(春秋) 예기(禮記)에서 선유(先儒)들의 미진한 부분을 논변(論辨)하여 이름하되 천견록(淺見錄)이라 하였다.조선 태조2년, 1393년에 이태조(李太祖)의 계룡산 행재소(鷄龍山行在所) 행행시에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와 자헌대부예문관태학사(資憲大夫藝文館太學士)가 되었다. 태조5년에 표전(表箋명나라에 올리는 글)문제가 있을 때 징명(徵命)이 없음에도 자원하여 명태조에게 나아가 정도전의 撰表가 신하들의 부족함이라고 국왕을 변호하고 위화도 회군 등이 조선의 충성심의 발로라고 역설하여 명황제로 하여금 노실수재(老實秀才)라는 칭찬과 우례(優禮)를 받았다. 공은 평생을 국가의 보위에 시종하였으되 좌우에 치우침이 없었으며 문형에 최조로 올랐으나, 평생 공의 뜻은 선조들의 학문을 계승하는 저술과 학문에 있었다.

1409(태종9년) 경저(京邸)에서 서거하시었다. 임금이 유사(有司)에 명하여 치상(治喪)케 하고 세자가 친제(親祭)하였으며 삼관(三館)과 성균관 등에서 소뢰(小牢)로 제사하였다.

추충익대좌명공신(推忠翊戴佐命功臣)숭정대부 검교 의정부 찬성사(檢校議政府贊成事)보문,예문,집현전대제학, 지경연,춘추, 성균관사판내자,예빈시사, 세자이사 길창군 시문충공(諡文忠公)에서 후에 4子 안숙공(安肅公)준(蹲)이 훈공을 받음에 따라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좌의정 길창부원군으로 추증되었다.(영가언행록)

공의 詩는 동문선(東文選)에 들고 문집 40권이 있는데 그 각판(刻)이 진주와 거창관아에 소장되어 있었다. 조선조가 창업하고 예도(禮度)를 제정함에 있어 일에 따라서 반드시 자문을 구하니 경세의 예문(禮文)과 외교 사명(辭命)이 모두 공에게서 전출(傳出)하였다.

공은 도학문장(道學文章)외에 필법 또한 정묘(精妙)하여 韓脩, 成石璘, 幻庵 등의 명필이 외축(畏縮)되었다. 스승 목은(牧隱)이색(李穡)은 '성기(性氣)가 온아(溫雅)하기는 양촌같은 이가 없다.' 하였으며, 서거정(필원잡기)와 김창집의 (자경편)에서는 '양촌의 (入學圖說)은 주자(朱子)의 태극도(太極圖)와 중용장구(中庸章句)의 설에 의거하여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를 작성하였는데 광박하고 정미함이 전성(前聖)이 개발하지 못한 바로서 후학을 계발한 바가 무궁하였다. 국초(國初)의 문학과 사도(師道)로서는 선생이 오직 1인이다.' 라고 하였다.

묘소는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陰城郡笙極面防築里) 능안에 亥坐로 있고 아우 매헌공(梅軒公) 우(遇)가 지문(誌文)을 짓고 손자 좌상(左相) 남(擥)이 비음기(碑陰記) 및 행장(行狀)을 지었으며 충간공(忠簡公)이개(李塏)가 왕명으로 신도비문을 지었다. (소한당실기)

權門의 五始 孝行錄

孝行錄序

府院君吉昌權公 嘗命工人畫二十四孝圖 僕卽圖爲贊人頗傳之 旣而院君以畫與贊獻之大人菊齋國老 菊齋又手抄三十有八事而以贊見徠於是前後所贊 凡六十有四事而歲丘子附子路王延黃香則爲章六十有二矣

부원군 길창권공(諱 準)이 일찍이 공인에게 명하여 24효자의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내(이제현)가 여기에 찬(贊)을 써서 사람들이 이것을 전해 왔었다. 이윽고 부원군은 다시 이 그림과 찬을 그 아버지 국재(諱溥)께 드렸더니, 국재는 여기에 또 손수 38가지 효도에 대한 일을 쓰고, 찬은 나에게 맡겼다. 이리하여 전후에 내가 찬을 한 것이 64가지인 바, 그 중에서 우구자(우구자)는 자로에 붙이고 왕연은 황향에 붙이고 보니 도합62장이 되었다.

孝行錄 後序

吾伯祖昌和公諱準 爵崇開府 壽過六旬 事我曾祖菊齋文正公諱溥 晨昏色養 得其懽心 又爲倩工圖古人二十四孝 且請益齋爲贊而獻之 欲令文正玩樂於心 以忘其老 文正得而悅之 手自抄錄三十八事以附益之 亦令益齋爲贊 此孝行錄所由作也

우리 백종조(伯從祖)창화공(昌和公,권준)은 벼슬이 개부(開府)에 이르렀고 나이는 六旬이 넘었으나, 우리 증조부 국재 문정공을 섬김에 아침저녁 부드러운 얼굴로 봉양하여 그 환심을 얻었고,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데려다 예전 효자 24인을 그리고 익재에게 청하여 찬을 지어 바치니, 이는 문정으로 하여금 그 그림을 구경하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서 늙음을 잊게 하려는 것이었다. 문정은 그림을 받고 기뻐하여 손수 38가지 사실을 초록하여 덧붙이고 또 익재로 하여금 찬을 짓게 하였으니 이것이 효행록을 만들게 된 이유이다.

惟我文正 至爲宰相 事文淸公 諱旵 克盡子職 厥後位總百官 爲國元老 諸子若壻皆至達官 有一家九封君之稱 勳閥之盛 榮養之備 雖古罕儷 而公常以勤儉自持 富而好禮 貴而好學 調燮之暇 手不釋卷 嘗註銀臺集二十卷 又於八旬餘歲 博考傳籍 手自編摩 以成此錄 其勤翰墨 老而不輟如此

우리 문정공은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으나, 문청공(文淸公,旵)을 섬김에 능히 자식된 도리를 다하였고, 그 뒤에 백관을 거느리는 벼슬에 올라 나라의 원로가 되었으며, 자손들도 모두 큰 벼슬을 하여 한 집에 아홉 봉군(封君)이 있다는 칭호가 있으니, 훈벌(勳閥)의 성대함과 영화로운 봉양이 구비됨은 전고에도 짝이 드물다. 공은 항상 근검으로 자신을 단속하여, 부자가 되어도 예의를 좋아하며, 귀하게 되어서도 학문을 좋아하여 정승으로 일을 보는 여가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일찍이 「은대집(銀臺集)」20권의 주(註)를 냈으며, 또 나이 80여 세에 여러 책을 널리 상고하고 손수 편집하여 이 「효행록」을 만들었으니, 그 학문에 부지런하여 늙어도 쉬지 않음이 이러하였다.

益齋之贊 明白懇切 欲使人人皆得易知也 昔孔子於孝經 上自天子之貴 下至庶人之賤 始自髮膚之不傷 終至宅兆之安厝 靡不備擧而悉言之 以訓萬世 子事父母之道 無餘蘊矣 此錄之於貴賤終始倫理之常 靡所不備 又於人倫之變 患難不測之事 孝經之所未及言者 亦無不載 雖若過於聖人之中制者往往有之 然於人子事親之誠 必至於此 然後斯爲極矣 豈自料其過於禮哉

익재의 찬이 명백하고 간절한 것은 사람마다 다 알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예전에 공자가 「효경(孝經)」을 지을 때 위로는 천자의 귀함으로부터 아래로는 서인의 천함에 이르기까지, 털끝 하나 살 한 점 손상하지 않는 데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산소에 편안히 안장하는 데까지 빠놓지 않고 모두 말하여 만세를 훈계하였으니, 자식이 부모 섬기는 도가 다시 더할 것이 없다. 이 「효행록」은 귀천과 종시(終始)에 대한 윤리의 떳떳함이 구비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인륜의 변으로 하여 일어나는 불측한 환란의 일에 대해서는, 「효경」에서 말하지 못한 것도 다 기록하지 않는 것이 없다. 비록 성인(聖人)의 중도(中度)에 벗어나는 것이 가끔 있기는 하나, 자식이 되어 어버이 섬기는 정성은 반드시 여기에 이르고서야 극진하게 되리니, 어찌 그 예에 지나치는 것을 스스로 헤아리랴.

且孔子編詩 欲使學者興於詠歌 而得其情性之正 其修春秋 以爲托之空言 不如載諸行事之深切著明也 此錄所載皆是古人行事之著明者也 其贊亦可詠歌而興起者也 苟以此書 布之閭巷 以教童蒙 朝夕詠歌 習熟見聞 以興起善心而感發其天性 則人人可爲曾閔之行 不謬於聖人作經垂訓之旨 有補於國家化民成俗之意矣 其書雖小 其有功於名教甚大 豈可以其出於近代而忽之哉 近觀此書每加敬慕者以吾祖父精力之所寓不敢不敬也

또 공자가 「시경(詩經)」을 편찬한 것은 배우는 자로 하여금 읊조리고 노래하는 것으로 흥기시켜 그 성정(性情)의 바름을 얻게 한 것이요, 「춘추(春秋)」를 지은 것은, 공언(空言)에 의탁하는 것이 행사(行事)를 기록하는 것만큼 더 깊고 절실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효행록」에 기록된 것은 예전 사람의 행사를 뚜렷이 나타낸 것이요, 그 찬(贊) 또한 읊조리고 노래하여 흥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천성을 감동하게 하면, 사람마다 증자(曾子)와 민자건(閔子騫)의 효행을 할 수 있으리니, 성인이 경서(經書)를 지어 훈계를 남긴 뜻에 어긋나지 않고, 나라가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순후하게 하는 뜻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 글은 적으나 명교(名敎)에 대한 공은 매우 큰 것이라, 어찌 근대에 생긴 글이라 하여 소홀히 여길 수 있으랴. 근(近)이 이 글을 보면서 매양 경모(敬慕)를 더하는 것은 우리 조부의 정력이 깃든 것이라 더욱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永樂三年之夏近方在告得闕鷄林新刊之本 字有差誤 遂改正之 因有感發 不計擧拙 妄加註解於 逐章之後者 非能有所發明也 但欲寓吾拳拳敬慕之意云耳 若夫諸賢所錄之次 本以比事以爲對 故不拘年代之先後 今爲註解而亦不詳其世代者 家無典籍 學亦不博 且自把筆 未浹旬日而畢 故不暇於參究 以俟後日之續添 然於此益歎我文正之博洽 而恨吾之未學也 後之觀者寧不以小兒强作解事者責之哉

영락(永樂) 3년(1405년 태종5) 여름에 내가 마침 휴가 중에 계림(鷄林)에서 새로 발간한 책을 얻어 보게 되었는데, 글자가 틀린 것이 있으므로 드디어 개정(改正)하고서 감동되는 마음이 생겨 자신의 변변치 못함을 스스로 헤아리지 않고 망령되이 장(章)마다 주해를 붙인 것은, 능히 발명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나의 끊임없이 경모하는 뜻을 붙이고자 함에서였다. 그러나 이 책에 기록한 사람의 차례는 본래 서로 비슷한 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대의 선후는 가리지 않았다. 지금 주해(註解)를 하면서 또한 그 세대를 자세히 하지 못한 것은 집에 책도 없고 학식도 넉넉지 못한데다가, 또한 붓을 든지 열흘도 못 되어 끝냈기 때문에 상고할 겨를이 없어서였으니, 뒷날의 교정을 기다린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우리 문정공의 박학에 탄복하고 나의 배우지 못함을 한하게 되었다. 뒤에보는 자가 어찌 어린아이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책망하지 않으랴.

이로서 세상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효(孝)에 관한 책의 편찬은 권국재공과 길창부원군이 펴낸 「효행록」이 그림과 더불어 온전한 책의 형태로는 최초이므로 다음부터는 「사시(四始)」에 하나를 더하여 「오시(五始)」의 권문(權門)이라고 해야 하겠다.

大學 解說 繼續

安東權氏 大宗院 宗史硏究委員 36世孫 正憲 權彛彩

第五章 格物致知(격물치지)

⊙所謂致知, 在格物者는 言欲致吾之知인댄 在卽物而窮其理也라 蓋人心之靈이 莫不有知요 而天下之物이 莫不有理언마는 惟於理에 有未窮故로 其知, 有不盡也니 是以로 大學始教에 必使學者로 卽凡天下之物하야 莫不因已知之理而益窮之하야 以求至乎其極하나니 至於用力之久而一旦에 豁然貫通焉則衆物之表裏精粗, 無不到而吾心之全體大用이 無不明矣리니 此謂物格이며 此謂知之至也니라.

解說: 이른바 앎에 이르는 것이 사물을 구명함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앎에 이르려면 사물에 가까이하여 그 이치를 窮究(궁구)함에 있음을 말한다. 사람 마음의 영명함은 앎이 없을 수 없고, 이 천하의 사물이 이치가 있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 다만 그 이치에 미쳐 구명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앎이 부진한 데가 있게 된다. 이러므로 대학에서 맨 먼저 가르치기를 반드시 배우는 자로 하여금 천하의 사물에 가까이하여 이미 알고 있는 이치에 근거하고 더욱 추구해 가서, 그 궁극에까지 이르게 하였나니 힘씀이 오래 이고 나서 일에 확 트이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모든 사물의 表와 裏 그리고 精과 粗가 드러나지 않음이 없게 되고 내 마음의 온전한 體와 커다란 用이 밝아지지 않음이 없게 되고 내 마음의 온전한 體와 커다란 用이 밝혀지지 않음이 없게 되리니 이를 두고 사물이 究明됨이라 하며, 이를 두고 앎에 이르는 것이라 한다.

註解: ◆格物→학자들의 해석이 구구하나, "사물의 이치를 로 궁구하는 일"로 보면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窮究(궁구)→속 깊이 연구함. ◆表와 裏→겉과 속. ◆精粗(정추)→정밀함과 추잡함, 자세함과 거칠음. ◆精(정)→정교할 정, 밝을 정. ◆粗(추)→추잡할 추, 거칠 을 추. (간략할 조.) ◆究明→사리를 궁구하여 밝힘. 闕文(궐문)→빠진 글이나 글자.

이 글은 <大學> 古本에는 없는 것을 넣고 朱熹가 補亡章(보망장)이라 한 것이다. <大學>古本 經文 맨 끝에 "此謂知本 此謂知之至也 (이것을 일컬어 근본을 앎이라 하고, 이것을 일컬어 앎의 지극함이라 한다.)"라고만 되어 있었던 것을 朱熹가 錯簡(착간)으로 인정하고 傳의 五章이라 하여 이 자리에다 옮겨 놓았다. 이 두 句節은 程伊川(정이천)이 필요 없이 덧붙여진 글이라 하여 뒤로 붙였는데, 朱熹는 이를 좇아 옮긴 것으로 보인다. 朱熹는 두 句가 앞에 있던 어떤 闕文(궐문)에 대한 結語라 생각하고, 그 闕文이 經의 格物致知의 意義를 풀이한 傳이라 하여, 자기 나름으로 보충해 넣었던 것이다. 뒤 두 句의 앞내용은 원래 <大學>古本에는 없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朱熹의 의도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格物, 致知에 대한 朱熹의 解義를 다시 인용해보면, "格은 至의 뜻이요 物은 事와 같다. 사물의 理致에 窮究하여 그 極處에 이르지 않음이 없고자 함이다." 하였고, 또 "致는 미루어 極에까지 이름이요, 知는 識과 같다. 나의 知識을 極致에 까지 미루어 그 아는 바에 다하지 않음이 없고자 함이다."라고 하였다.

위 原文에서, 致知가 格物에 있다는 것은, 致知하려면 먼저 格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간단하게 말해서 格物 이후에 致知라는 것이다.

인간 세계의 事物이 究明되어 거기에 內在하는 理致가 터득됨으로써 인간의 智的인 啓發을 크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바탕이 마련된 뒤에야 인간은 자기 意念을 照明하여 善, 惡, 邪, 正의 倫理的 價値에 대한 명석한 通察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인간은 事物과 함께 存在 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存在하는 世界의 사물에 대한 知覺, 認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知覺 認識의 능력은 곧 <知>를 말한다. 인간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知>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물은 <知>의 對象이며 또 그것의 形成, 啓發(형성 계발)의 契機(계기)가 된다.

사물을 究明하여 그 이치를 터득해 갈이 폭 넓고 뚜렷할수록 그만큼 <知>의 세계가 넓고 밝아지게 되며, 사물의 이치에 밝지 못하면 역시 <知>의 세계가 밝지 못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맨 먼저 가르치기를, 반드시 세계의 모든 사물에 나아가 그 이미 알고 있는 이치에 根據하여 그것을 더욱 철저하게 구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窮理 探求의 과정을 끊임없이 밟아 가면 어느 단계에 이르러 사물의 背後에 존재하는 커다란 原理를 만나게 되고 그 원리를 把握하게 되면 사물의 形象 배후의 모든 이치에 通達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면 또한 자신은 心性 世界가 通明해 진다는 것이다.